

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선거 공고

- 법무부는 오늘(10. 13.)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「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」를 구성하였음
- 아울러,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선거받는 절차를 10. 14.(수)부터 10. 21.(수)까지 진행할 예정임

1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

- 법무부는 오늘(10. 13.)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「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」를 구성하였음
 -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,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,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,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,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임
 - 비당연직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문무일 전(前) 검찰총장, 여정성 전(前) 서울대학교 부총장,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,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을 위촉하였음 <공소청법 제41조>
-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위원 중에서 경륜과 사회적 신망을 두루 고려하여 문무일 전(前)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하였음

②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천거 절차

-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(팩스·이메일 제외)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게 천거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음
- 천거 기간은 10. 14.(수)부터 10. 21.(수)까지이며,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함 <공소청법 제28조, 제35조>
- 법무부 홈페이지(www.moj.go.kr)에 피천거인의 자격,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임

③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심사 절차

- 법무부장관은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하여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「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」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함
- 그 후, 「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」는 심사대상자에 대한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, 법무부장관은 「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」의 추천내용을 존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함

④ 별첨 :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천거 공고문. 끝.

담당 부서	형사사법국 형사사법총괄과	책임자	과장	나하나 (02-2110-3248)
		담당자	검사	임하나 (02-2110-4202)

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천거 공고

법무부는 「공소청법」 제41조, 「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」(대통령령)에 따라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 받고자 합니다.

1. 제도의 개요

-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게 천거할 수 있습니다.
- 법무부장관은 피천거인을 포함하여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으로 제시하게 됩니다.
 - ※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공소청검사등으로 재직하였던 사람, 법무부 형사사법국장, 법원행정처 차장, 대한변호사협회장, 한국법학교수회 회장,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,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법조인 3명(1명 이상은 여성) 등 총 9명으로 구성
-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,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됩니다.

2. 천거인의 자격

-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개인·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게 천거하거나, 그 밖에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3. 피천거인의 자격

-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천거할 수 있습니다.

〈 관련 법률 규정 〉

「공소청법」

제28조 (검찰총장의 임명자격)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직(職) 또는 사무에 15년 이상 재직 또는 종사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.

1. 판사, 검사 또는 변호사
2.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국·공영기업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
3.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

제35조(재직연수의 합산) 제28조·제29조 및 제34조를 적용할 때 둘 이상의 직 또는 사무에 재직 또는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더하여 계산한다.

4. 천거 방법

- (1) 천거인은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(2) 비공개 서면 천거

-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.

※ 「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」 제25조

-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법규에 따른 천거 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「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」 제27조

(3) 천거서 기재 사항

- 천거서에는 천거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주소 및 연락처와 함께 피천거인의 학력,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.

※ 첨부 파일에 있는 천거서 서식 예시를 참고 바랍니다.

(4) 천거 기간

- 2026년 10월 14일(수)부터 10월 21일(수)까지

※ 천거서는 2026년 10. 21.(수) 18:00까지 법무부에 도달하거나 제출되어야 합니다.

(5) 천거서 제출 방법

- 천거서는 법무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※ 이메일, 팩스로는 제출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법무부를 방문하여 제출할 경우,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(1동) 609호 형사사법총괄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.
-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, 수신인을 “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형사사법국장”으로 하시면 됩니다.
- 방문 및 우편 접수시 공히 천거서 겉봉에 “피천거인 천거서류 재중”이라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5. 문의처

- 그 밖에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무부 형사사법총괄과 검사인사팀(02-2110-420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이메일 문의는 insamoj@spo.go.kr)

2026. 10. 13.

법무부장관 직무대행

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서(예시)

□ 천거인 (개인)

성명	홍길동 (洪吉童)
직업(소속)	
생년월일	. . . 생 (만 세)
주소	서울 ○○구 ○○로 123 ○○아파트 00동 000호
연락처 (전화번호/이메일)	02) 000-0000 / 010-XXXX-XXXX / -----@---.co.kr (.com)

□ 피천거인

성명	김갑동 (金甲童)		
직업 (소속)			
생년월일	. . . 생 (만 세)		
학력 (고교/대학)	○○고 / ○○대 ○○학과		
사법시험	제 회	사법연수원	제 기
주요경력	(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도 가능)		
천거사유	(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도 가능)		
기타			

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서[예시]

□ 천거인 (법인 또는 단체)

법인(단체)명	○○○○○○○
대표자 성명	홍길동 (洪 吉 童)
소재지	서울 ○○구 ○○로 1 ○○빌딩 000호
연락처 (전화번호/이메일)	02) 000-0000 / 010-XXXX-XXXX / -----@----.co.kr (.com)

□ 피천거인

성명	김갑동 (金 甲 童)		
직업 (소속)			
생년월일	. . . 생 (만 세)		
학력 (고교/대학)	○○고 / ○○대 ○○학과		
사법시험	제 회	사법연수원	제 기
주요경력	(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도 가능)		
천거사유	(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도 가능)		
기타			